

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등록이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을 포함하여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등록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원에 기한 등기·등록만을 뜻하며,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③ 법령 소정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인등기는 등록면허세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④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가 신고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 주택으로 본다.
 -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③ 항공기 중에서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 장치에 의한 무인항공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④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3.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③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4.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다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겨 그 가액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③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이고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5. 「지방세법」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 ③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6.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시 적용되는 휴면법인이 아닌 것은?
 - ①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한 법인
 - ③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 ④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간주법인
7.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 ② 담배소비세의 성립시기는 담배를 소매인의 영업장으로 반입하는 때이다.
 - ③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 ④ 지방교육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9.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기한연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0.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 ② 매매·중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반드시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